

특별 일회 지원 프로그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1. 특별 일회 지원(Special One Time Assistance, SOTA)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SOTA 프로그램은 1년 치 임대료 전액을 적정 자격의 노숙자 서비스부(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 DHS) 고객에게 지급하여 뉴욕시 안에서, 뉴욕주 다른 카운티로, 뉴욕 외 다른 주, 푸에르토리코, 워싱턴 D.C. 등 뉴욕주 밖으로 이주하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SOTA는 직장, 생활보조금(SSI) 또는 사회보장 장애수당(SSD) 혜택으로 받는 경상소득이 있고 임대료가 현재 또는 예상 가구 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가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누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가 있는 가구: 보호소에 90일 이상 체류한 가구
 - 독신 성인 및 성인 가족: 보호소에 지난 365일 중 90일 이상 체류한 가구
 - SOTA는 DSS에서 임대료를 지원해줄 특별 일회 지원 교부금 지급 기간 이후에 직접 임대료를 부담할 향후 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만 제공됩니다. 직장, SSI 또는 SSD 혜택으로 받는 경상소득이 있고 임대료가 현재 또는 예상 가구 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가구가 자격 대상입니다. 뉴욕시 내에서 이사하는 가구의 경우 다른 연방, 주 또는 시 임대 보조금 지원 자격이 없어야 합니다.
- 3. 임대료 부담 능력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고객이 SOTA를 이용하려면 소득 증명을 해야 하며, 임대료는 가구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4. 보호소에 체류 중인 가구는 어떻게 특별 일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케이스 관리자와 주거 전문가가 SOTA 신청 자격에 해당할 수 있는 식별합니다. 또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고객이 담당 케이스 관리자와 주거 전문가에게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 전문가는 고객의 주택 탐색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고객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 5. SOTA를 방 임대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SOTA는 셋방 임대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방 임대는 뉴욕시의 아파트나 단독 주택에서만 허용되며 공과금은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방은 자녀가 없는 성인 1-2인 가구에 대해서만 승인되며, 방이 임대료 안정화 또는 임대료 통제 단위에 있는 경우 승인되지 않습니다.
- 6. SOTA를 이용할 때 아파트 검토를 받아야 합니까?**

예. DHS 또는 프로그램 제공 담당자가 뉴욕시, 뉴욕주 Nassau, Rockland, Suffolk 및 Westchester 카운티, 뉴저지 Bergen, Essex, Hudson, Passaic 및 Union 카운티 내 모든 세대에 대해 종합적인 아파트 검토 체크리스트를 사용한 실사를 진행합니다.
- 7. 아파트가 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가 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검토 후 즉시 문제를 해결하여 두 번째 검토를 통과하거나 지역 기관으로부터 문제에 대한 수리 인증 양식(Certificate of Correction)을 받은 경우 여전히 SOTA 이용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SOTA 를 이용하여 이사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사후 자원이 있습니까?

SOTA 참여자는 다음의 경우 SOTA 핫라인에 718-557-1399 번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가 거주지를 수리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경우
- 거주지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 소득이 손실되거나 감소하고 있으며,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예: 직업 교육이나 직업 서비스)를 추천받고 싶은 경우.
- 거주지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
-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에 대한 지침(예를 들어, 자녀를 학교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이 필요한 경우.

9. 임대인은 언제 SOTA 지원금을 지급받습니까?

2020 년 2 월부터 새로운 SOTA 참가자의 경우, SOTA 프로그램 하의 임대료는 월별로 임대주에게 지급됩니다.

10. 임대 기간에 고객인 임차인이 아파트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SOTA 임대주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주는 임차인이 거주 세대를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영업일 기준 5 일 이내에 HRA 에 알리고 임차인 거주 기간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시에서 법적 수단을 강구해 환수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SOTA 지원 기간 이전에 해당 세대에서 이사를 나갈 경우 DSS 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11. 임대주가 첫 해에 임차인을 퇴거시키려고 할 경우 임차인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임차인은 SOTA 핫라인에 전화하여 해당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퇴거 방지 서비스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며, 뉴욕시 임차인의 경우 HRA 가 가정 법원에서 임차인을 대변해 줄 변호사를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임대주 계약에 따라 퇴거 발생 시 임대인은 거주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시에서 법적 수단을 강구해 환수합니다.

12. DSS 고객이 12 개월 이내에 뉴욕시 보호소로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DHS 및 HRA 가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호소에 돌아오는 이유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고객의 필요를 검토하고 해결하며,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보호소에 다시 입소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13. 개인이나 가족이 12 개월 후 부담금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SOTA 는 DSS 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줄 특별 일회 지원 교부금 지급 기간 이후에 직접 임대료를 부담할 향후 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만 제공됩니다. 직장, SSI 또는 SSD 혜택으로 받는 경상소득이 있고 임대료가 해당 경상 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가구가 자격 대상입니다. 소득이 손실되거나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 추천이 필요한 세입자는 SOTA 핫라인에 문의해 주십시오. 세입자가 뉴욕에 있는 경우, 현지 홈베이스 프로그램 또는 HRA 혜택 액세스 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개인 또는 가족은 SOTA 프로그램에 12 개월 참여 후, 보호소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극소수의 개인이나 가족만 해당합니다.

14. 고객이 SOTA 를 두 차례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DHS 고객은 본 임대 지원을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